

## 연구진흥위원회 규정

- 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연구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2. 8. 1)
- 제 2 조 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, 산학협력부단장, 위원장이 제청한 8인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2. 8. 1, 2013. 3. 1, 2014. 12. 22, 2017. 6. 1)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2. 8. 1, 2013. 3. 1, 2014. 12. 22, 2017. 6. 1)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(단, 보직교수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) (개정 2012. 8. 1)
-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협력단 연구팀장이 된다. (개정 2012. 8. 1, 2013. 3. 1, 2014. 12. 22, 2015. 5. 1, 2017. 6. 1)
- 제 3 조 (위원장등의 직무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. (개정 2012. 8. 1)
-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4 조 (회의)**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(개정 2012. 8. 1)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2. 8. 1)
- 제 5 조 (기능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2. 8. 1, 2014. 12. 22)
1. 연구진흥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
  2.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  3. 기타 연구업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
- 제 6 조 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8. 1)
- 제 7 조 (간사)** (삭제 2012. 8. 1)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